

제171회 거창군의회
〈정례회〉

- 거창승강기산업밸리-
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(안)

거 창 군

-거창승강기산업밸리-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(안)

I. 승강기 관련 기업체 유치

□□ 기업유치 배경

- 거창승강기밸리는 『산·학·연·관』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야 하며 “밸리”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핵심이자 난제이므로 **기업치가 선행**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**중앙정부**(지경부, 교과부)와 **경남도의** 요청에 의거
- 승강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“**승기협**” 조직 결성 후 기업유치 추진

<<(사)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(승기협)>>

- 설립목적 : 승강기산업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및 지원함으로써 국내 승강기산업을 진흥코자 함
- 설립일 : 2009. 10. 8(2008. 11. 21 발기인 대회)
- 회원사 : 65개업체 (회장 음한욱), 부회장4, 사무총장1, 감사2
- 사업계획 : (주)거창승강기 설립후 “거창승강기” 브랜드 개발
- 초기자본 : 회원출자(선도업체) - 주식공모 : 거창군민 대상

- 승기협 창립총회 및 거창 투자업체 특별지원 요청(2009. 2. 11)
- ※ 현재 “밸리”는 승강기산업 인프라가 없는 불모지로 투자시 각종 비용과다발생으로 실패위험이 상존하기에 **선도기업체 특별지원관리**

<< 특별지원 요구사항 >>

- 금년 6월부터 공장설립이 가능한 부지 5만여평 조기제공
- 입지보조금 : 금년 12월까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산업단지 분양가의 90% 지원
- 투자(공장건립, 시설·설비 등) 보조금 : 시설비중 용자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, 이자 발생분중 기업체는 1%부담
- 물류비 지원 : 거창이전에 따른 추가발생 물류비 적자분 3년간 지원
- 근로자 복지향상 : 산업단지 내 Guest House 및 임대주택 등

○ 「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 및 지원조례」 제정(2009. 10. 7)

-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·증설하는 경우 입지·투자보조금 지원
-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군의회 사전 동의와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가능

○ 승기협 요청사항 군의회 보고(2010. 2. 23)

□□ **그간 추진사항**

○ 2010. 3. 10 : 거창군 지원(안) 및 특별지원 대상 실무협의

<<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>>

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20여개 이상 선도 기업체가 금년12월까지 집단으로(5만여평 이상 부지)이전하여 (주)거창승강기를 설립후 거창승강기 브랜드 개발생산시 특별지원 요구사항 적극수용(군의회 동의 필요)

- ┌ 이전 전·후 상시고용 30인 이상 기업이 창업·신설·증설하는 경우
- └ 이전 전·후 상시고용 10인 이상이 전부 이전하는 경우
- ※ 참여업체 선정기준(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)

○ 2010. 3. 15 ~ : 승기협 요구사항 수용 조건으로 투자의향 조사(**10개업체**)

○ 2010. 8. 12 : 기업유치 전략 협의 승기협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

○ 2010. 9. 6 ~ : 공문발송 및 업체방문 등 **기업유지 활동전개**

◆ **투자유치 현지 출장내역(9.6 ~ 11.11) : 130여개 업체**

- 수도권 출장 : (주)코리아엘텍외 70여개 기업
- 남부권 출장 : (주)영진E/L외 51 기업
- 기타권역 출장 : (주)한독E/L외 9개 기업

◆ **승강기 관련 기관·단체와 업무협의 및 협조요청**

- 중앙정부 및 지자체 : 지경부, 행안부, 경남도
- 기 관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, 승관원, 경남TP
- 단 체 : 승기협, 승강기조합·공학회·협회·보수협회 등

※ **세부 기업유지 활동 내역 : [붙임1 참조]**

○ 2010. 10. 6 : 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방문(**산하기업 투자협조**)

○ 투자확약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: 2회(김해, 서울)

II. 승강기 업체 유치현황

□□ 투자 협약서 징구업체

업 체 현 황				업 체 투자의향					비 고
NO	업 체 명	대표자	종업원	부지면적	투자금액	고용계획	투자분야	이전구분	
계	28개 업체		923명	294,953m² (89,223평)	545억원	568명			
1	(주)코리아엘텍	송준호	13명	9,075m ²	26억원	28명	권상기 제조	전부	국비
2	(주)동인산전	지상열	25명	3,305m ²	10억원	25명	스위치류 제조	전부	국비
3	(주)모든E/L	김호일	25명	15,000m ²	20억원	30명	완성품 제조	전부	
4	오 양 테 크	이미숙	12명	33,000m ²	50억원	50명	부품 및 완성품 제조	전부	
5	누리엔지니어링	전종백	11명	9,917m ²	18억원	11명	제어반 제조	전부	
6	(주)천금테크	정동화	20명	6,600m ²	15억원	10명	부품 및 완성품 제조	전부	
7	(주)도하인더스트리	김홍규	165명	66,000m ²	80억원	50명	승강기 부품 소재	일부	
8	(유)한독엘리베이터	유기준	28명	9,917m ²	30억원	30명	완성품 제조	일부	
9	(주)스타리프트	이영자	16명	6,610m ²	15억원	16명	도어류 부품(완성품)	전부	국비
10	(주)세명E/L	이철영	12명	9,917m ²	14억원	10명	엘리베이터 제조	전부	
11	(주)광덕산업	안경남	15명	4,960m ²	15억원	15명	승강기 부품 전반	전부	국비
12	아이티리프트	유승하		16,530m ²	40억원	40명	IT-Vator 개발 및 생산	창업	
13	(주)대덕엔지니어링	권순범	12명	3,305m ²	10억원	15명	주차기용 E/L 제조	전부	
14	(주)메이저텍	정오현	7명	9,917m ²	10억원	15명	로프브레이크 등 제조	전부	
15	(주)신한E/L	음한욱	42명	9,917m ²	20억원	30명	엘리베이터 제조	증설	
16	(주)해성산전	이현국	270명	3,305m ²	10억원	31명	승강기 TM 제조	증설	
17	(주)남양엘리베이터	김재준	15명	3,305m ²	15억원	15명	완성품	전부	
18	(주)오 코	박영하	35명	23,140m ²	30억원	35명	승강기 바닥 등 제조	전부	
19	(주)영진E/L	김효식	11명	9,917m ²	15억원	10명	완성품 제조	증설	
20	(주)대성IDS	최성규	14명	3,305m ²	5억원	10명	제어반 제조	증설	
21	(주)금보E/L	김영환	11명	3,305m ²	8억원	10명	완성품 제조	증설	
22	K C A	김병하	10명	3,305m ²	5억원	10명	승강기 부품 소재	증설	
23	한국승강기(주)	최종관	32명	4,959m ²	15억원	10명	화물용 승강기 제조	증설	
24	(주)한양엘리베이터	김 훈	40명	6,611m ²	15억원	10명	연구소 및 제조	일부	
25	동천기업(주)	이정빈		3,305m ²	15억원	15명	승강기 부품 처리	창업	
26	(주)동양산전	이관우	32명	6,610m ²	12억원	12명	완성품 제조	일부	
27	코팩엔지니어링(주)	김승구	35명	3,305m ²	12억원	5명	승강기 유압관련 부품	일부	
28	신 기 산 업	이상원	15명	6,611m ²	15억원	20명	승강기 부품 제조	일부	

□□ 업체 구성현황

기준조건 만족여부	계	조건 만족	조건 불만족	비 고
	28개업체 (294,953m ²)	18개업체 (243,720m ² , 83%)	10개업체 (51,233m ² , 17%)	조건 불만족 업체 컨소시엄 구성 ⇒4개 업체 만족
완성품 및 부품 구분	계	완성품 생산	부품생산	부품소재
	28개업체 (294,953m ²)	13개업체 (99,293m ² , 34%)	11개업체 (103,215m ² , 35%)	4개업체 (92,445m ² , 31%)
국비지원 대상유무	계	국비 지원대상	국비 비 지원 대상	
	28개업체 (294,953m ²)	4개업체 (23,950m ² , 8%)	24개업체 (271,003m ² , 92%)	

Ⅲ. 특별 지원시 소요예산

□□ 자원별 소요예산 [일반산단 5만평 입주기준]

[단위 : 억원]

구 분	계	국 비	도 비	군 비	기타(민자)
계	257.53	10.34	26.63	188.94	31.62
입지 보조금	134.99	10.34	0.43	124.22	
시설자금 이차지원	85.40		26.20	59.20	
물류비 손실보전	5.52	-	-	5.52	-
주 거 지 원	31.62	-	-		31.62

□□ 군비 연차별 소요예산

[단위 : 억원]

구 분	계	~ 2010	2011	2012	2013 ~	비고
계	188.94	-	65.95	51.78	71.21	
입지 보조금	124.22	-	55.95	43.52	24.75	
시설자금 이차지원	59.20	-	7.00	7.00	45.20	
물류비 손실보전	5.52	-	3.00	1.26	1.26	

※ 세부 산출내역 : [붙임 2 참조]

IV.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

□□ 입지 보조금 지원 : 산단 분양가의 90%지원

<< 지원 근거 >>

-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
-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

《 검토 의견 》

- 거창승강기산업밸리는 승강기 관련 기관·단체·기업체를 집적화하여 침체된 국내승강기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함이며, 승강기인프라가 구축되기 이전인 **금회에 한하여 지원이 필요**
- 연관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 기업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전체 규모는 5만평이상 공장용지에 **투자금액이 500억이상**이고 **1일 상시고용 규모가 300명이상**이므로 특별 지원함이 타당
- 국비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70%중 95%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군비부담은 21%로 미미하나
- 국비지원 비대상 기업(비 수도권)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군비 부담이 따르지만 수도권 이남 타 지자체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를 하고 있기에 중부권 지자체보다는 유리한 지원책 없이는 기업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

<<타 지자체 기업유치 지원책>>

- 강원 삼척시 : 수도권과 260km, 우리군(300km)과 유사
 - ※ 분양가 50%지원(60억원 한도), 물류비 50%지원(재무 제표상)
 - 투자금액의 3억원 초과비용의 10%지원
- 충남 예산군 : 분양가 70% 및 투자비 70%지원
- 충남 서천군 : 분양가 50% 및 투자비 50%지원
- 부산광역시/전남 : 분양가의 50% 입지보조금 지원
- 정부에서는 행복도시, 혁신도시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
- ※ **지자체별 기업유치 지원책 세부사항 : [붙임 3 참조]**

□□ 시설·설비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: 3년거치 5년균분, 기업체1%부담

<< 지원 근거 >>

-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《 검토 의견 》

- 현행 경남도 조례상에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2.5% 이자지원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경남도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
- 도비지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비지원 대상 기업체에 대한 이자지원은 준비 부담이 불가피
- 지역 금융기관이 연리5% 여신특화 상품 도입하면 연1%정도 이자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
- 대출받는 기업의 담보력과 신용도에 따라 지원한도액과 상환기간을 달리하므로 융자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음

《 지원시 조치해야 할 사항 》

-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또는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

※ □□ 시설·설비자금 융자시 이자지원 □□ 근거 신설

- 지역금융기관과 여신특화상품 도입 적극 추진

□□ 거창이전에 따른 물류비 손실분 보조금 3년간 지원

《 검토 의견 》

- 기업이 거창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제약요인은 물류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승강기산업밸리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물류비 지원이 필요
- 현행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며 우리군 입지여건과 유사한 강원도 삼척시에는 물류비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

※ 『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』 - 물류비 지원

⇒ 관할세무소 확정 신고한 운반비를 기준으로 50% 지원

□□ 산업단지내 식당·휴게소·기숙사 또는 임대주택 등 민자유치

<< 지원 근거 >>

-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

《 검토 의견 》

- 입주하는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10가구이상 사원주택 건립시 부지 매입비 일부지원 및 진입도로 개설, 가로등 설치 지원 가능
- 입주하는 기업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, 수요조사 실시후 타당성 확보시 부분별로 민자유치 추진

V. 기대 효과

□ 승강기 산업의 활성화

- 승강기산업 인프라 조기구축으로 후속 기업체 거창유치 가속화
- 거창승강기R&D센터 건립 동기부여 및 승강기대학 졸업생 취업,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 등□□승강기밸리사업□□동력 확보
- 국내 유일한 승강기밸리 조성으로 승강기 산업도시 발전토대 구축
- 기업집적화를 통한 공동개발, 공동수주, 공동마케팅, 신규시장 개척 등으로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도모

□ 인구증가 및 일자리 창출

- 20여개이상 승강기업체가 집적화되어 가동될 경우 1)고용(인구증가) 효과 1,400여명, 생산액 3,000억원의 효과를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

□ 지역 랜드마크 확보 및 위상 강화

- 승강기산업에 대한 랜드마크를 확보함으로써 「광주의 광산업」, 「창원의 기계산업」, 「울산의 자동차산업」 과 같이 산업경쟁력 강화

□□ 대학과 지역산업 연계발전 기대

- 승강기대학 졸업생의 안정적 취업책으로 승강기대학 경쟁력 향상
- 입주기업은 지역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 형성

1) 산업입지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(건설교통부 외, 2006.12)에 따라 2012년(목표년도) 기준 산정

VI. 향후 추진계획

- 마스터플랜 변경 협의 및 투자계약서(안) 실무협의...11. 18
 - 일반산단내 일정부분 승강기 관련업체 집적화 추진 계획변경
 - ※ 거창군 ⇔ 경남테크노파크 ⇔ 승강기대학 ⇔ KTL ⇔ 승기협
 - 승기협 임원진과 투자계약서(안) 협의
- 투자확약서 제출업체와 계약서(안) 업무협의.....11. 22
- 거창승강기밸리 투자협약 체결(경남도).....11. 25
 - 경남도&거창군&투자기업간 투자협약 체결 ⇒ 의존재원 확보
-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투자계약 체결(거창군).....11. 30
 - 거창군&선도 기업체 ○ 선도 기업체&(주)동원
-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투자계약서 제출(지경부)....12. 01

VII. 건 의

-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해 사활을 걸고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제시하면서 기업체 유인
- 최근 수도권과 행복도시,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곳에 투자시 거창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업성이 있으므로 정부시책사업 대상지보다 **유리한 지원책이 필요**하며
- 초기 투자한 선도기업체가 성공한 기업으로 모델화 해야만이 후속 기업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금회에 한하여 **특별 지원함이 타당**
- 승강기밸리는 R&D센터건립과 승강기대학, 기업유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선도기업체 유치가 시급하므로
- 금회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**군의회에서 사전 동의**를 해주실 것을 건의

[붙임 1]

그간 기업유치 활동내역

일 자	주 요 내 용	비 고
'08.10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거창승강기센터(R&D)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체를 대상으로 거창승강기밸리 투자 설명(최초 공감대 형성) 	
'08.11.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거창승강기밸리에 대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(65개업체) -거창승강기밸리내 기업유치 적극 추진 ▫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구성을 위한 발기인대회 개최 	
'09.02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기협 창립총회 개최 -임원선출 : 회장 음한욱외 8명 -거창군과의 투자협상 단일창구 역할 수행 	
'09.03.0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기업유치 현지 출장상담 -출 장 지 : (주)동화 - 창원시 팔용동 소재 -주요내용 : 승강기산업단지 입주관련 및 기업 지원사항 설명 	
'09.03.0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기협 인터넷 카페 개설 -밸리사업 및 회원사 등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 ▫ 거창승강기밸리 소식지 발간 및 회원사 배포 -'10.11.11 까지 8회 발간 및 배포 	
'09.04.0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강기밸리 마스트플랜 초안 검토회 승기협 임원 참석 -방문자 : 음한욱회장 외 2명 -주요내용 : (주)거창승강기 사업 제안, 승기협 사무실 제공 요청 	
'09.04.0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기업유치 현지 출장 -방문기업 : 2개 기업체(대성IDS, 영진E/L) -주요내용 : 기업체에서는 획기적인 지원책(입지보조금 90%) 요구 	
'09.05.0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기협에서 거창군 기업지원책 제시 요구 -조례상의 기업 지원사항 제시(06.22) 	
'09.05.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기업유치 현지 출장 -방 문 자 : 군1, 승관원1 -방문일정 : 5.12 ~ 5.22(10일간) -방문기업 : 수도권 28개 기업체 -주요내용 : 거창승강기밸리 선도 투자기업체 의향 조사 -결 과 : 긍정적 투자의향 : 8개 기업체(관망7, 무관심12) 	

일 자	주 요 내 용	비 고
'09.07.1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기협 임원진과 군수님 간담회 개최 -참석대상 : 13명(군3, 승기협임원 7, 추진위1, 승관원2) -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거창군 지원사항 설명 ▪ R&D 예산확보를 위해 기업체 투자확약서 요구 (적극적 투자 당부) 	
'09.09.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경남은행⇔거창군 MOU체결 -투자기업의 특화된 여신상품 지원에 관한 협약 	
'09.09.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기협사무실 개소 -참석대상 : 24명(승기협회원 12명, 외부초청인사 12명) -사무실 개소 및 (주)거창승강기 필요성 등에 대해 자체 회의 	
'09.10.0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 -입주기업 특별지원 근거 마련 	
'09.12.2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투자유치 협상단 구성 및 운영 -협상단장 : 1010추진단장(군3, 대학2, 추진위1, 승관원1, 승기협2) -주요내용 : 국내 승강기 기업체 밸리내 집적화 유치활동을 목표로 구성 	
'10.01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기업체 투자유치를 위한 실무협상 -참석대상 : 군 협상단3, 승기협4, 대학2, 승관원2 -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일반산단 투자 제안 ▪ 입지보조금 90% 지원 제안(비수도권 70%) ▪ 기업체 1 ~ 2%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지원 ▪ 초과 물류비에 대하여 물류보조금 지원 	
'10.01.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거창승강기밸리 투자정보 안내 공문 발송 -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지보조금 : 수도권90%, 비수도권 70% ▪ 시설설비자금 용자 : 10억원 한도, 이차보전 4.5% ▪ 기업체 1 ~ 2%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지원 ▪ 초과 물류비에 대하여 물류보조금 지원 	

일 자	주 요 내 용	비 고
'10.01.2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기협 임원진 거창방문에 따른 투자협상 -우리군 제안 : 입지보조금 수도권 90%, 비수도권 70% -승기협 요구 : 입지보조금 수도권 90%(전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업체 1 ~ 2%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지원 ▪ 초과 물류비에 대하여 물류보조금 지원 	
'10.01.2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남부권 기업유치 현지 출장 -방 문 자 : 군1, 대학1 -방문일정 : 1.27 ~ 1.29(3일간) -방문기업 : 수도권 7개 기업체 -주요내용 : 거창승강기밸리 선도 투자기업체 의향 조사 -결 과 : 긍정적 투자의향 2개업체(서광기공, 금보E/L) 	
'10.02.0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선도기업체 지원사항 조정에 따른 승기협과의 실무협의 -승기협 요구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지보조금 수도권 90%(전체) ▪ 융자지원 : 10억원 한도, 기업체 1%의 이자 ▪ 임대주택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요구 ⇒ 내부 보고를 통한 요구사항 수용 	
'10.02.2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선도기업체 특별 지원사항에 대한 군의회 보고 및 사전동의 -일반산업단지내 승강기 기업유치 -지원대상 : 상시고용인 기준 전부 이전시 10인, 신·증설시 30인 이상 -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지보조금 수도권 90%(전체) ▪ 융자지원 : 10억원 한도, 기업체 1%의 이자 ▪ 임대주택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요구 ▪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물류비 60% 지원 	
'10.03.0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기협 임원진 거창방문에 따른 간담회(대학 개교시) -장 소 : 한국승강기대학 -승기협 요구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업지원조건 신·증설 30인 기준에 대하여 완화 요구 	
'10.03.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기협 임원진 조찬회의 방문시 투자협상 -협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차보전 기업체 1% 이자부담외 차액지원(2년거치 3년 상환) ▪ 참여업체 지원기준 완화 요구 등 	

일 자	주 요 내 용	비 고
'10.03.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선도기업체 유치를 위한 기업체 순회 출장 -방 문 자 : 군1, 대학1 -방문일정 : 3.24 ~ 3.26(3일간) -방문기업 : 전국 10개 기업체 -주요내용 : 거창승강기벨리 선도 투자기업체 의향 조사 -결 과 : 10개 기업체 투자의향 확인 	
'10.04.0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기협 임원진 조찬회의 방문시 투자유치 현안 논의 -논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투자기업체 요건 미달 기업체 사업계획 이행 전망 등 ▪ 승기협 총회 개최 관련 사항 논의 	
'10.05.2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당면현안 업무협의 -장 소 : 신한E/L사무실(승기협회장) -협 의 자 : 7명(군3, 승기협4) -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0개 기업체 사업계획은 이행여부 및 특별지원 요건 미해당 ▪ 실투자업체 추가발굴하여 협의토록 상호 합의 	
'10.06.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강기벨리기업협의회 회원사 방문을 통한 발전적 의견 수렴 -방 문 자 : 1010추진단장외 2명 -협 의 자 : 7명(군3, 승기협4) -방 문 처 : 모든E/L의 3개 기업체 	
'10.08.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강기벨리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 -참석인원 : 15명(경남도2, 거창군5, 승기협8) -주요내용 : 거창군기업지원(안)에 대해 상호 합의 	
'10.09.0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선도기업체 유치를 위한 기업체 순회 출장 -출 장 자 : 9명(군3, 대학1, 승기협5) -방문일정 : 9. 6 ~ 11. 11(중 30일간) -방문기업 : 전국 30여개 기업체 -주요내용 : 거창승강기벨리 선도 투자기업체 투자확약서 징구 -결 과 : 28개 기업체 투자의향 확인(11.11기준) 	

일 자	주 요 내 용	비 고
'10.10.0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방문에 따른 투자 협조 요청 -방 문 자 : 승강기조합2(이사장 외 1), 한국산업기술시험원2 -요청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합 산하의 승강기 기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▪ 일반산업단지 및 승강기대학 현지 답사 	
'10.10.1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투자 예정업체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(수도권/남부권) -개최일정 : 10월 19일, 21일 (2개 권역별로 시행) -참 석 자 : 투자기업 17개 기업체 -요청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동종 또는 연관기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있도록 협조 요청 ▪ 기타 발전적 의견 수렴 등 	
'10.10.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거창승강기벨리 투자정보 및 투자기업 모집에 대한 공문 발송 -발 송 처 : 승기협 및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산하 전 기업체 -주요내용 :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투자 모집 	

[붙임 2]

소요예산 세부 산출근거

[단위 : 억원]

구분	내역	재원구분					비고
		계	국비	도비	군비	자비	
계		272.54	10.34	26.63	188.94	46.63	
입지 보조금 (28개업체, 50,000평, 90%보조)	분양금액 : 평당300천원×50,000평=150.00억	150.00	10.34	0.43	124.22	15.01	
	[국비지원 : 4개업체, 7,250평] (7,250×300,000)×50%보조=10.88억 ▪ 국비 : 10.88억×95%=10.34억 ▪ 도비 : 10.88억×4%=0.44억 ▪ 분담금 중 군비 : 10.88억×2%=0.11억 ▪ 군비 : 21.75억×40%=8.7억	21.75	10.34	0.43	8.80	2.18	
	[국비지원 비대상 : 24개업체, 42,750평] 42,750×300,000=128.25억 ▪ 군비 : 128.25억×90%=115.4억	128.25	-	-	115.42	12.83	
용자 이차보전 (3년거치 5년상환)	10억×28개업체×5%(6%中)=14억	85.4	-	26.2	59.2	-	
	▪ 도비 - 2년거치 3년 상환(2.5% 이차보전) - 13개 기업체 지원대상 ⇒ 3년간 19.5억, 2년간 6.7억원	26.2	-	26.2			이자 부분 (원금 별도)
	▪ 군비 - 3년거치 5년 상환(도 지원액 차액) ⇒ 4년간 52억, 4년간 27억원	59.2	-	-	59.2	-	
물류 손실보전 (3년한도 지원)	3년간 차량 및 유류, 인건비 지원 =5.52억원	5.52			5.52	-	
	[차량지원 3대(5ton 2대, 10ton 1대)] [유류대 및 기사 인건비 지원(년간)] ▪ 차량 : 5천+5천+7천 = 170백만원 ▪ 유류 : 186,000원×40주×3대=22,320천원 22,320천원×3년 = 66,960천원 - 1,000km, 연비8km, ⇒ 125L - 125L×1,488원(1488원/L)=186,000원 ▪ 인건비 : 35백만원/연 × 3인=105백만원 105백만원×3년 = 315백만원	5.52	-	-	5.52	-	3년간 지원
주거지원 (공영 원룸 건립시)	임대APT 또는 공영원룸 민자유치 추진	31.62	-	-	-	31.62	
	▪ 부지매입비 (1,600평기준) - 1,600평 × 500,000원 = 8억 ▪ 건축공사비 945평(50세대, 825평, 5층규모) 825평 × 2,500천원 = 20.62억 ▪ 부대공사비(공사비의 15%) = 3억	31.62	-	-	-	민자 31.62	12개월 입주 한도

[붙임 3]

타 시도군 입지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

구 분	지원조건	지 원 내 용	비 고
거창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금액 30억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가의 30% 범위내 지원 (2억원 한도) ※ 500억이상 또는 300명이상 특별지원가능 	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승강기산업체 이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고용 10인 이상 전부 이전 - 상시고용 30인 이상 각각이전 또는 지방분공장 신·증설 (위원회 사전 심의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가의 70% 범위내 지원 ※ 군 의회 사전 동의시 초과지원 가능 	거창승강기산업 밸리 지원조례
부 산 광역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, 상시고용 20명 이상 기업 이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가의 50% 범위 내 (50억원 한도) 	
전라남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가의 50% 범위 내 (예산범위내 사안별 결정) 	
강원도, 삼척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신·증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가의 10% 범위 내 (10억원 한도) 	방재클러스터추진 ※물류비:50%지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·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0억이상, 200명이상 - 250억이상, 150인이상 - 200억이상, 100인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·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% 범위내에서 최고 60억 - 40% 범위내에서 최고 40억 - 30% 범위내에서 최고 30억 	
광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금액 20억이상, 상시고용 20인 이상 상시고용 50인이상 벤처기업, 이노비즈 인증기업, 광산업영위 기업 등은 투자금액15억이상, 상시고용15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가의 20% 범위 내 ※ 500억이상 또는 300명이상 특별지원 가능 	
충 청 남 도	공주시 서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금액 100억이상, 상시고용50인이상 첨단업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가의 50% 범위 내 ※ 1천억이상 또는 500명이상 특별지원 가능
	서천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년이상 운영, 상시고용 30인이상 투자금액 100억이상, 상시고용50인이상 연간 매출규모 100억이상 생명과학기술산업 등 군에서 중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가의 50% 범위 내 ※ 군에서 중점 육성이 필요하다 인정될 시 위원회 심의 거쳐 100분의120까지 추가 지원 가능
	예산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명공학, 항공우주 등과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키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한 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가의 70% 범위 내 ※ 1천억이상 또는 300명이상 특별지원 가능

[붙임 4]

입지보조금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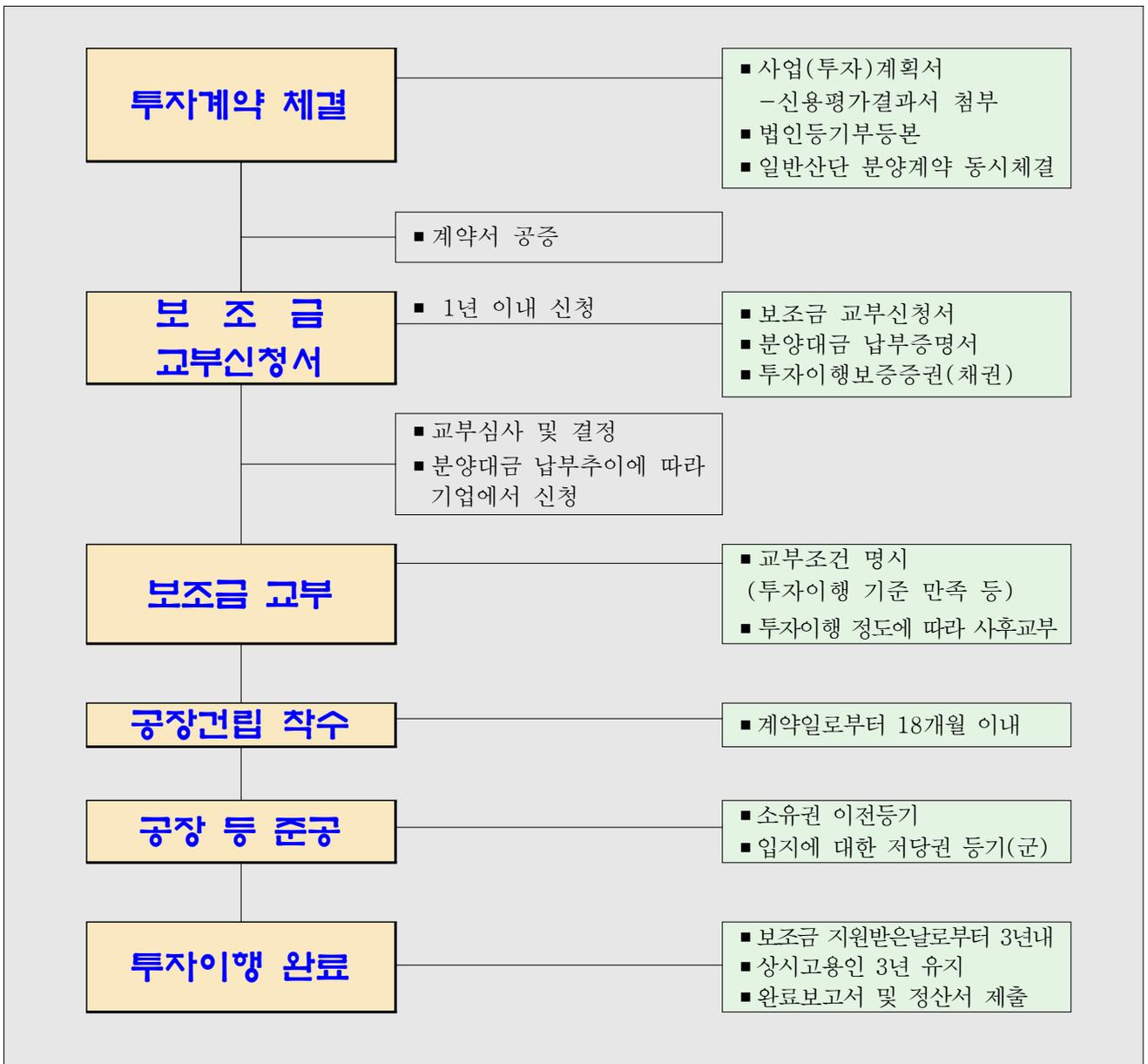
■ 지원한도

○ 입지보조금 지원한도

- 시설·설비에 따른 건축(바닥)면적의 3배 이내의 부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

■ 보조금 지원 절차

- 투자협약 및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『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』에 따라 지원



■ 투자이행 기준 ⇒ 위배시 보조금 환수

투자계약서 내용중 “투자 이행기준”에 아래 내용을 명문화(明文化)!

- 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 - 10년내 용지 처분금지
- ② 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내 공장 착공
- ③ 보조금을 최종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내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 완료
- ④ 투자완료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고용 유지
- ⑤ 타업종 전환 제한(지자체장 승인 후 가능)
- ⑥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장치설정
┌ 이행보증증권 설정
└ 공장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가등기
- ⑦ 그 밖에 연중 관리감독을 통해 실투자여부에 대하여 집중관리

<< 투자계약서(안) >>

제3조(투자 이행기준) 제2조에 따른 “을”의 이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①. “을”은 “거창일반산업단지”의 분양공고에 따라 분양 계약을 통하여 계획입지를 확보한다

② “을”은 계획입지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“갑”에게 투자이행보증증권 또는 지원받은 입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동의서 등 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 징구 및 해당부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.

③ 확보된 계획입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건립계획등을 수립하여 “갑”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에 따라 공장 등을 건립한다.

④ “을”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내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,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“갑”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“을”은 제2조에서 정한 상시고용인원을 3년동안 만족하는 등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 이행기준은 "별지4"와 같다

⑥ “을”은 “갑”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
■ 투자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기준

1.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.
2.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조의 사업계획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,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 할 수 있다.
3.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및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 할 수 있다.
4. 이밖에 본 기준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-335호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 제14조(사후관리)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